
2019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

2019. 02



I . 보세화물제도 개선

II . 심사 · 환급 제도 개선

III . FTA 제도 개선

1. 단일보세공장 특허 요건 확대(고시 개정)

1. 개정안

기 존	개 정
<p>■ 단일보세공장 특허 요건</p> <p>① 근접한 장소일 것</p> <p>② 동일기업일 것</p> <p>③ 물품관리체계 통합관리로 반물입 물품관리 및 재고 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</p> <p>④ 제조·가공의 공정상 일괄작업에 각 공장이 필요한 경우일 것</p>	<p>■ 단일보세공장 특허 요건 확대</p> <p>①~③ (좌 동)</p> <p>④ 제조·가공의 공정상 일괄작업에 각 공장이 필요한 경우일 것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OR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근접거리(15km)의 동일기업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일 것</p> <p>※기존 보세공장과 15km이내의 수개의 공장을 하나의 단일공장으로 특허 가능</p>

2. 기대효과

- 단일보세공장의 특허요건 확대를 통하여 수출기업 물류지원 및 일자리·부가가치 창출 기여

3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'18.12.24

4. 하위법령·규칙 개정

- 해당사항 없음

5. 추가 설명

- 제조·가공의 공정제한에 추가하여 거리제한을 두어 특허 요건을 강화

2 보세공장 특허 범위 확대(고시 개정)

1. 개정안

기 존	개 정
<p>■ 특허 대상 범위</p> <p>○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수출하는 물품을 제조·가공·수리·조립·검사·포장 등의 작업</p>	<p>■ 특허 대상 범위 확대</p> <p>○ 수출하는 물품의 작업 범위에 분해 작업을 포함</p>

2. 기대효과

-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

3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'18.12.24.

4. 하위법령·규칙 개정

- 해당사항 없음

5. 추가 설명

- 자동차 KD(Knock Down) 부품에 대한 수출 시 활용을 위한 목적

3 보세공장 잉여물품 반출처리절차 개선(고시 개정)

1. 개정안

기 존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보세공장 잉여물품은 수입신고 전 반출 불가 ○ 보세공장 잉여물품은 반출 시 수입신고후 보세공장에서 반출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보세공장 잉여물품은 수입신고 전에도 반출 가능 ○ 먼저 즉시반출신고 후 반출하고 나중에 일괄수입신고 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 전 보세공장 잉여물품 즉시반출 신고절차 마련 * 법 제253조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제도를 활용하여 잉여물품 즉시 반출신고(10일이내) *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기준은 「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」에 따름

2. 기대효과

- 잉여물품의 반출처리절차 개선을 통하여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

3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'19년 2월 예정

4. 하위법령·규칙 개정

- 해당사항 없음

5. 추가 설명

- 주로 반도체 산업의 부품에 대한 신속한 반출을 위한 목적

4 종합보세구역 장외작업장 반출입절차 간소화(고시 개정)

1. 개정안

기 존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장외작업장 제조가공 물품의 종합보세구역 재반입 의무 ○ 거대중량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장외작업장소에서 수출입·반송신고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장외작업장 제조가공 물품의 종합보세구역 재반입 의무 완화 ○ 장외작업장소에서 수출입·반송신고 또는 폐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보세구역 재반입 의무 생략

2. 기대효과

- 장외작업장 제조·가공물품 등이 종합보세사업장에 재반입 하지 않고 장외작업장에서 수출입신고 및 폐기신청 등이 가능토록 개선

3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'19년 2월 예정

4. 하위법령·규칙 개정

- 해당사항 없음

5. 추가 설명

- 특정한 사유에만 제한 되었던 종합보세구역 재반입 의무를 생략하여 제한을 완화

1 AEO 기업의 정기 자체평가 간소화

1. 개정안

기 존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AEO 기업 자체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기준 數 : 총 462개 ○ 증빙서류 : 모두제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AEO 기업 자체평가 간소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총 121개 (74% 축소) ○ 증빙서류 원칙적 미제출(필요시만 제출)

2. 기대효과

- AEO기업의 사후관리비용 절감(연간 39억여원)

3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'19.04.01

4. 하위법령·규칙 개정

- 해당사항 없음

5. 추가 설명

- 평가 항목 수를 축소하고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평가, 증빙서류는 필요시만 제출

2 국내거래증명서 발급대상 확대(고시 개정)

1. 개정안

기 존	개 정
<p>■ 국내거래증명서 발급대상</p> <p>○ 수입 후 국내판매 등 소유권이 이전(수입자→생산자·수출자)되는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만 국내거래증명서 발급</p>	<p>■ 자본금 규정 완화</p> <p>○ 생산자재를 제조시설을 가진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 소유권 이전이 없는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국내거래증명서 발급</p>

2. 기대효과

- 소요량 산정 및 환급신청 업무의 효율성 도모

3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'18.12.28

4. 하위법령·규칙 개정

- 해당사항 없음

5. 추가 설명

- 동일 기업 제조공장간의 거래, 수탁가공 거래 등에 대한 기납증, 분증 발행 가능

3 수출용원재료 관세 등 일괄납부 무담보원칙 도입(환특법 제6조 개정)

1. 개정안

기 존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 일괄납부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원칙) 담보제공 ○ (예외) 담보제공 생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신용담보업체(수출·환급실적 등 요건 충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본금 규정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원칙) 담보제공 생략 ○ (예외) 담보제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세법령 등 위반자, 체납자 등 * 관세법 제248조와 동일하게 규정 * 무담보원칙, 예외적 담보 가능 (Negative 입법방식 전환)

2. 기대효과

- 관세법상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무담보원칙을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시에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중소 수출입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

3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'19.07.01

4. 하위법령·규칙 개정

- 해당사항 없음

5. 추가 설명

-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와 함께 적용 가능 / 신용담보제도는 폐지 예정

1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대상 범위 확대 및 명확화(법 제233조 개정)

1. 개정안

기 존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원산지조사 대상물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세를 양허받을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 ■ 원산지조사 대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,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원산지조사 대상물품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관세 양허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 ■ 원산지조사 대상자 명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좌동) (좌동)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

2. 기대효과

-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

3. 적용시기 및 적용례

- '19.01.01

4. 하위법령·규칙 개정

- 없음

5. 추가 설명

- 일반 CO에 대한 원산지 조사도 시행하기 위한 목적

2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무역협정을 FTA관세특례법령에 반영

1. 개정안

기 존	개 정
<p>■ <신 설></p>	<p>■ 한-중미 FTA 관련 규정 신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협정관세율, 원산지결정기준 신설 ○ 긴급관세조치,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조치 신설 ○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명일부터 1년 ○ 원산지조사결과 회신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사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○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·서명 ○ 원산지증명서 보완기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45일 ○ 원산지 조사 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간접조사와 직접 서면·현지조사 ○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시 수입물품, 상용견품, 인쇄 광고물,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수출 후 재수입 물품

2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무역협정을 FTA관세특례법령에 반영

2. 기대효과
 -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무역협정 활용 조기 정착 (코스타리카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, 니카라과, 파나마)

3. 적용시기 및 적용례
 - '19년 상반기 예정 (한-중미 FTA 발효 후 FTA관세특례법령에 개정예정)

4. 하위법령·규칙 개정
 - 해당사항 없음

5. 추가 설명
 - CO보완 기간은 모든 협정이 30일->45일로 개정.
 - 현재 국회 상정 중이며 의결 후 익월 1일부터 발효 예정(빠르면 4/1일 발효예정이나, 국회 일정에 따라 미정)
 - 발효 후 지침설명회 별도 개최 예정

Thank You



Contact Point

김예진 관세사

010-2818-0388

yjkim@drcus.co.kr